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재원·김준형·서왕진
박은정·황운하·최민희
신장식·한창민·강경숙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금융기관·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u>

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